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

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제목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등 적용 안내

1. 관련
   가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6.20.)
   나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(2021.6.27.)

2.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,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**자율과 책임에 기반**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**2021.7.1.부터 시행**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

3. 2021.7.1.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특히,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**자율적으로 단계 조정(1~3단계)이 가능**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**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**토록 하였으니,

   * 시·도 단위 단계 조정은 현행과 같이,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전 보고 후 시행
   시·군·구 단위 단계 조정은 시·도와 사전협의하고, 시·도는 협의결과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사후보고
   ** 시설별 기본방역수칙(단계별 조치 포함) 조정 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협의 필요

   ○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 체계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   ○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업장 방역실태 점검 시 해당시설의 방역수칙 위반 사실의 고의성,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 등 감염병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시설에 대해 즉시 집합금지 조치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

   -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,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,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,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도 함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가. 적용기간*: **2021. 7. 1.(목) 0시 ~ 별도 안내 시까지**

*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8516(2021.6.11.)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8531(2021.6.11.)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8532(2021.6.11.),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-19181(2021.6.18.)에 의한 거리두기 단계별(시범적용) 적용기간은 본 조치로 대체함

나. 적용지역: **전국(수도권/수도권 외 지역)**

다. 적용단계

○ 수도권:**거리두기 2단계****

**** 수도권은 7.1.(목) 0시~7.14.(수) 24시까지 2주간 사적 모임은 6인까지, 집회는 49명까지 가능**

○수도권 외 지역***:**거리두기 1단계**

*** 부산광역시, 대구광역시, 광주광역시, 대전광역시, 울산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
강원도, 충청북도, 충청남도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경상북도, 경상남도, 제주특별자치도

1)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(1, 2, 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

○ **대상시설(35종)**

- **1그룹**(3종): 유흥시설(유흥주점, 단란주점, 클럽(나이트), 감성주점, 헌팅포차), 콜라텍·무도장, 홀덤펍·홀덤게임장
- **2그룹**(5종): 식당·카페, 노래(코인)노래연습장, 목욕장업, 실내체육시설(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),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
- **3그룹**(12종): 학원 등, 영화관·공연장, 독서실·스터디카페, 결혼식장, 장례식장, 이·미용업, 실내체육시설(비교적 중저강도 운동), 유원시설, 오락실·멀티방, 상점·마트·백화점(300㎡ 이상), 카지노(외국인 카지노 제외), PC방
- **기타시설**(13종): 스포츠경기(관람)장, 경륜장·경정장·경마장(각 국공립시설), 미술관·박물관·과학관, 실외체육시설(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), 숙박시설, 파티룸, 도서관, 키즈카페, 돌잔치전문점, 전시회·박람회, 마사지업소·안마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종교시설
- **고위험 사업장**(2종): 콜센터, 물류센터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1: (수도권) 다중이용시설 등(1~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

붙임2: (수도권 외 지역) 다중이용시설 등(1~3그룹, 기타시설, 고위험 사업장) 방역지

2) 모임·행사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방역지침 의무화

■ 수도권 지역은 **7.1.(목) 0시부터 7.14.(수) 24시**까지**▲사적 모임은 6인까지, ▲집회는 49명까지 가능**
■ 수도권 외 지역은 지역 내 감염양상을 고려 자율적으로 이행기간 적용 등 별도 조치 가능

- **(1단계)**참여인원 500인 이상인 경우,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,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 · 협의

<협의 대상 행사(예시)>

법인·단체·공공기관·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, 설명회, 공청회, 학술대회, 토론회, 국가기념일 행사, 기념식, 수련회, 사인회, 강연, 대회,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

※ 전시회·박람회, 국제회의·학술행사, 대규모콘서트, 종교행사는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 적용

- 집회 500인 이상 금지(500인 미만 집회 방역지침 의무화)

- **(2단계)** 사적 모임 9인 이상 금지, 그 외 모임행사는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(집합·모임·행사 및 집회 100인 이상 금지)

- **(시험)**수험생 간 1.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, 대기자 공간 마련, 시험관계자,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

* 기타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

붙임3: (수도권)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붙임4: (수도권 외 지역) 모임·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3) 교통시설

○ **대상시설**: 대중교통시설(국제항공편 제외)

○ **법적근거**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 각호

○ **조치내용**: 방역지침 의무화

붙임5: (전국)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

4) 국공립시설

○ 소관부처·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

※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(이용)특성, 방역관리 상황,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, 국공립시설(정부청사 체력단련실 등) 탄력적 운영가능

※ 별도 기본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(카지노, 경륜·경마·경정 등)은 해당 수칙 적용

5) 사회복지시설

○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

6) 학교(등교)

○ 1단계, 2단계: 전면등교 가능

※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,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

6) 직장근무(유연근무 등 활성화)

○ 시차 출퇴근제, 점심시간 시차제, 재택근무 권고(1단계: 자율, 2단계: 300인 이상 사업장(제조업 외) 10% 권고)

4.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,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,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,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.

5.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,

○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,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,

-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,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,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(행정안전부)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: 6. 기본방역수칙 1부.
7.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부.
8. 시설별 수칙 홍보자료 1부. 끝.
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장

수신자 본부각과장, 중앙행정기관장, 중앙방역대책본부장, 17개 시도지사

주무관	행정사무관	생활방역팀장	사회전략반장
홍명기	박은경	심은혜 2021.6.28.	손영래
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이기일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강도태	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권덕철	

협조자

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사고수습본부-20199 (2021. 6. 28.) 접수

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(어진동) 7층 / http://ncov.mohw.go.kr

전화번호 044-202-1725 팩스번호 044-202-0000 / mk7069@korea.kr / 비공개(5)

위험할 땐 119, 힘겨울 땐 129